

통 장 회 의 자 료

양 정 동



일반홍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추가 공모 공고	담당자	홍성국
남양주		☎전화	4986

 알림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입지를 희망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설치계획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 생활폐기물 295.6톤/일, 재활용 잔재물 11.4톤/일(2030년 기준)

○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남양주시 전역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및 규모 : 소각시설 250톤/일

※ 상기 사항은 세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 기 간 : 2021. 1. 18. ~ 2021. 2. 15.

○ 범 위 : 남양주시 전역

○ 응모자격 :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의 주민동의와 신청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

※ 단,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지의 토지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동의나 매각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 후보지 조건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제외)

○ 신청서류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응모신청서
- 신청지역 주민동의서(신청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 신청지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서(신청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 ※ 신청서 접수장소 :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 ※ 접수기한 : 2021. 2. 15.(월) 18:00까지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지원

□ 기타사항

-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031-590-4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홍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복지 대상자 통신비 감면 홍보	담당자	노경민
		☎전화	2684

알림사항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하여 '21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제도를 마을 주민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1. 선정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0%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적용

3. 선정 기준(21년도 생계급여 기준)

-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926,424원,
3인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4. 신청 및 문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현 생계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21년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436	1,792,778	2,194,331	2,598,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수급자리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기가구)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일반홍보 	재사용 아이스팩 수거 및 인센티브 지급 사업 안내	담당자	홍성국
		☎전화	4986

 **알림사항**

생활쓰레기 20% 감량이라는 시정목표에 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 중인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에 대해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년 연중
- 사업내용
 - 주민센터에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그 양에 따라 재사용 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공
 - 훼손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만 해당
 - 주민센터 1층과 마을회관에 통별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 수거함에 배출하는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아이스팩 : 5개 또는 3kg 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매
 - 스티로폼 : 50리터(약 아이스박스 5개) 또는 1kg 당 종량제봉투 1매
 - 10리터 종량제봉투 2매 대신 20리터 종량제봉투 1매 선택 가능

일반홍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홍성국
		☎전화	4986

 **알림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하여 2021.01.11.(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홍보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 일반업종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미만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1차 신속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21.1.11.(월)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일반홍보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홍성국
		☎전화	4986

 알림사항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에 기여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께서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01.18.~'21.11.26.(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 4대
- 지원금액 : 1세대 당 1대 70% 지원(난로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접수방법

- 시청 산림녹지과에 제출서류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031) 590-2342

일반홍보 	「골목형 상점가」 등록 안내	담당자	홍성국
		☎전화	4986

 **알림사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2020.12.31.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골목 단위 소규모 상권에 대한 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통장님들께서는 관련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명품 상권 만들기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만들어요!

지정 요건 (※ 업종 무관)

- 2,000㎡ 내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 상점가 구역 내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하단 소상공인과의 문의

골목형 상점가는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 마케팅 지원, 간판 및 주차장 조성 등 시설 개선 **정무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 단위 소규모 상권에 대한 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남양주시
NAMYANGJU CITY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의 ☎ 031-590-2593

일반홍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홍성국
남양주		☎전화	4986

 알림사항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께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량 : 30대
- 지원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예정)자
- 지원금액 : 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 접수기간 : 2021. 1. 15. ~ 11. 30.(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접수처 : 시청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및 문의처

-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031) 590-2610

일반홍보	먹골배 명품화(배꽃)가루 지원 사업 신청	담당자	유연웅
		☎전화	8748



알림사항

배꽃가루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통장님들께서는 널리 전파해주시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21. 1. 29.(금)
- 신청대상 : 관내 먹골배 재배 농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
- 신청내용 : 배 꽃가루 지원(꽃가루 + 석송자)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공급희망농협 : 외부, 진접, 진건, 별내, 서울원에 농협 중 택 1

일반홍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담당자	유연웅
		☎전화	8748



알림사항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통장님들께서는 널리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2. 25.(목)
- 사 업 량 : 20개(트랙터, 경운기)
- 사 업 비 : 2,000천원(전액 보조)
 -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일반홍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협조 요청	담당자	이유미
남양주		☎전화	2984

 **알림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 확산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 상담, 구제제도 안내 등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통장님들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대 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한 실직 등 고통을 겪는 개인, 매출 급감 및 휴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업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 원 내 용

-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징수유예》
 - 이미 고지 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 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연장 가능, 최대1년)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가능
- 《세무조사 연기》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가능

신 청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가능
 - 방문 : 남양주시제1청사 법무담당관(납세자보호관)
 - 전화 : 031-590-3989 (팩스: 031-590-2900)
 - 우편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법무담당관(납세자보호관)